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회대학교의 각종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 ②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2.23.>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총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 학생복지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대학발전실장으로 구성하고, 일반 직위원은 교수회 추천 교원 2인, 직원노동조합 추천 직원 2인, 총학생회 추천 재학생 1인, 대학원 학생대표 1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인사 1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2.23.>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일반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2.23.>

② 위원장의 임기는 총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심의회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심의회는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기록·보존한다.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02.23.>

제8조(회의비 등) 심의회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기존의 발전기금위원회의 기금 관리에 관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